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6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6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나252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가합125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대창에이치.알.에스.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판결 선고 2015. 2. 2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나252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28.부터 원/엔 환율의 상승으로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에서 손실을 보기 시작한 사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환율 상승으로 거래의 손실을 본 것이 사회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위법행위 유무를 조사하였고 원고도 2008. 9. 8. 피고의 요구로 위 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의 직원인 B은 2009. 7.경 방송에 출연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은 2009. 7. 29. 만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소는 2013. 2. 18.에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09. 7. 말경에는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주식회사 모나미 등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08. 12. 30.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과 유사한 통화옵션계약에 관하여 일부 인용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에 원고가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에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이른바 오버헤지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는 경우 은행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